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4321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1. 주식회사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손계룡, 신혜진

변론 종결2019. 9. 24.

판결 선고2019. 10. 2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077,724원 및 그 중 99,304,157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3,773,567원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3.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129,375,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원고에게 129,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077,724원 및 그 중 99,304,157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3,773,567원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3.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123,077,724원 및 그 중 99,304,157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3,773,567원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 D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8. 1. 3. 원고와 사이에, 위 1)항의 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보험자 E,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1) 피고 회사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8. 3. 2. 원고와 사이에, 위 1)항의 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보험자 F,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8. 3. 1.부터 2019. 3. 1.까지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1) E는 2018. 5. 16.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6. 18. E에 보험금 99,304,157원을 지급하였다.

2) F는 2018. 4. 14.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6. 19. F에 보험금 23,773,567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보험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 회사, C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해야 하는데,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마. 1) 한편 피고 C과 피고 D는 부부로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9.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피고 C은 2018. 3. 23.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3. 27.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123,077,724원(= 99,304,157원 + 23,773,567원) 및 ① 그 중 99,304,157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6. 19.부터 2018. 7. 18.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8. 7. 24.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23,773,567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6. 20.부터 2018. 7. 19.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8. 7. 24.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D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는 당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1 내지 2개월 경과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지분이 공동담보로서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지분 가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피고 C과 피고 D가 2013. 9. 28.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3. 11. 29.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G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C은 중소기업은행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11. 29.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실, 피고 회사가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G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5. 7. 30.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8. 3. 23. 무렵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253,125,000원,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300,000,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2018. 3. 23. 무렵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이 532,500,000원($= 1,065,000,000원 \times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D와 피고 C은 부부로서 제1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을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과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90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위 매매대금 중 496,000,000원(= 계약금 90,000,000원 + 중도금 중 336,000,000원 + 잔금 중 70,000,000원)은 피고 D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출연하여 마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D가 피고 C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253,125,000원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주채무자는 피고 회사이고, 피고 C은 연대보증인이자 물상보증인, 피고 D는 물상보증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 소유 지분이 사해행위취소의 목적물인 경우에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제2 근저당권과 같이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 소유 지분이 사해행위취소의 목적물인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인(겸 물상보증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할 경우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법정대위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는바,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인 150,000,000원(= 300,000,000원 $\times$ 1/2)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소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지분의 가액 532,500,000원이 위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 403,125,000원(=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253,125,000원 +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50,000,00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지분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서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지분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남편인 피고 C와 공동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명의만 신탁해놓은 것으로서, 피고 D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지분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 C와 사이에 형식상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 C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300,000,000원을 부담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지분에서 피고 C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지분인 $1/3$ (= 피고 C 출연액 300,000,000원 / 매매대금 900,000,000원)을 뺀 나머지 $1/6$ (= $1/2 - 1/3$)은 피고 D가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반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매매대금 900,000,000원 중 피고 C이 지급한 돈이 404,000,000원, 피고 D가 지급한 돈이 496,000,000원이어서 매수 당시 피고 D가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들은 피고 D가 총 600,000,000원을 출연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496,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 C,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제2 근저당권 외에도 2차례나 피고 회사를 위해 이 사건 지분이 아닌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③ 피고 D는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은 이후에야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이 사건 지분 전체 또는 그 중 $1/6$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지분이 그 명의자인 피고 C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C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 C의 재산 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도 일응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취소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3. 11. 29.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된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8. 4. 1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② 2015. 7. 30. 주식회사 G 명의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된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8. 4. 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취소의 범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그리고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이 532,5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가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변동되었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별지2 표기재와 같이 144,272,242원(= 원금 123,077,724원 + 지연손해금 21,194,518원)인데, 위 금액이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129,375,000원(= 시가 532,500,000원 - 피담보채권액 403,125,00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인 129,37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29,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준구

별지